

부산지방법원 2023. 7. 12 선고 2022가단34808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

담당변호사 윤종휘

변 론 종 결 2023. 6. 14.

판 결 선 고 2023. 7. 1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28,713,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

피고는 (가칭)C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(이하 '추진위원회'라고 한다)의 초대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인데, 2020. 12. 29. 추진위원회 소유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남은 잉여금에서 피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128,713,350원을 두 번에 걸쳐 중복하여 지급받았다.

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후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 2021. 2. 15. 파산선고를 받은 추진위원회의 파산관재인이 추진위원회의 자산유출을 방지하고 부인권을 행사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되는 돈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됨이 당연하다.

2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.

원고는 청구취지상으로 자신에게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을 통하여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돈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파산자인 추진위원회의 채권임을 명시하였는바 원고가 파산자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.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정민